

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(2012. 1. 1)

개정 (2014. 1. 1)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연소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의 출판 학술활동과 관계되는 연구윤리의 확립, 연구발표 부정행위의 예방과 검증, 제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)

- (1)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,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.
- (2)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.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- (3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(4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- (5)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 3 조 (위원회의 기능)

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.

- (1)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
- (2)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
- (3)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의결
- (4)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
- (5)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

제 4 조 (위원회 소집 및 의결)

- (1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, 재적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(2) 의결된 내용은 연구부정행위 의심자(피제소자)에게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.
- (3)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.
- (4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,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(5)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.
- (6)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연구 출판 부정행위의 범위)

- (1) “표절”이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.
- (2) “위조” 및 “변조”란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연구자료 결과의 조작이나 변형,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(3) “중복게재”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(4) “부당한 저자표기”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(5) 기타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포함한다.

제 6 조 (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)

- (1)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한국연소학회지에 발표된 간행물에 한한다.
- (2)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4)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.
- (5)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.

제 7 조 (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)

- (1) 연구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.
 - ①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
 - ② 5년간 학회의 논문집과 학회지에 투고 금지
 - ③ 5년간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 금지
 - ④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
 - ⑤ 학회 회원자격 박탈
- (2)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부 칙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